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3. 6. 27.)

「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 부속서 72(전동보드)를 개정함에 따라,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」의 일부를 개정하였다.

주요 내용

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, 이에 맞춰 운용요령(별표5 및 별표13)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

시행일 :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

❖ [참고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규조문 대비표(일부 발췌)

현행

[별표5]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(제3조 관련)

분류	품목	세부품목
2. 생활용품	사. 전동보드	① 전동스케이팅보드
		② 전동킥보드
		③ 전동이륜평행차
		④ 전동보드류
		<신설>

[별표13]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(제13조 관련)

분류	품목	모델구분	세부안전적용범위
2. 생활	사. 전동보드	종락	종락
		<신설>	

개정(안)

[별표5]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(제3조 관련)

분류	품목	세부품목
2. 생활용품	사. 전동보드	① 전동스케이팅보드
		② 전동킥보드
		③ 전동이륜평행차
		④ 전동보드류
		⑤ 저속전동이륜차
		⑥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

[별표13]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(제13조 관련)

분류	품목	모델구분	세부안전적용범위	
2. 생활	사. 전동보드	종락	종락	
		저속 저동 이륜차	바퀴의 개수별 배터리의종류별	1개인 것, 2개인 것, 3개인 것, 4개 이상인 것 전압, 용량
		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	바퀴의 개수별 배터리의종류별 구동 방식별	1개인 것, 2개인 것, 3개인 것, 4개 이상인 것 전압, 용량 소모를, 자이로센서, 기타